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5

2022년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22년 8월 29일

다.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라. 상 정 일 :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9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충 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써
- 민간위탁 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재계약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기간 : 2023. 1. 1.~2025. 12. 31.(3년)
- 소요예산 : 연 3,389백만원
 - ※ 산출근거 : 충북형 생활임금, 물가 및 운영비용(유류단가, 전기, 가스 등)
 - 상승률 반영 및 정원 증가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심의일:2022.7.20.(수))

나. 시설현황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 건물면적 : 연면적 21,731m², 지하2층~지상6층, 4개동
- \bigcirc 부지면적 : $59,815m^2$ (대지 : $34,764m^2$, 임야 : $25,051m^2$)
- 연수시설 : 객실(110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다. 주요 위탁내용

-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수안보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연수원은 신임자 교육, 부서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 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수안보연수원 개원 : '08. 7. 11.

○ 최초위탁(1차) : '08. 6. 1.~'11. 5. 31. (수탁업체: ㈜HTC)

○ 재 위 탁(2차) : '11. 6. 1.~'14. 5. 31. (수탁업체: ㈜HTC)

○ 재 위 탁(3차): '14. 6. 1.~'17. 5.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재 위 탁(4차) : '17. 6. 1.~'19.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재 위 탁(5차) : '20. 1. 1.~'22.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2년 12월 31일)될 예정인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재계약'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 재위탁·재계약의 정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현황 〉

ㅇ 개 원 일: 2008. 7. 11.

ㅇ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 부지면적: 59,815㎡(대지 34,764㎡, 임야 25,051㎡)

o 규 모: 연면적 21,731㎡(지하2층/지상6층, 2개동)

ㅇ 주요시설: 객실(110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 연수 · 편의시설

ㅇ 운영방법: 민간위탁

ㅇ 수탁기관: (주)오브이룸스(대표: 서정완, 서울시 중구 퇴계로)

ㅇ 수탁기간: 2020. 1. 1.~2022. 12. 31.(3년)

ㅇ 위탁비용: 2,766백만원/년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기관(부서)별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을 통한 행정 능률항상과 직원 및 가족들의 여가·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 2008년 개원이후 (주)HTC가 운영해오다가 2014년 6월부터 ㈜오브이룸스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왔음.

- < 그 간의 위탁 경과 >

- ▶ 최초위탁(1차): '08. 6. 1.~'11. 5. 31. (수탁업체: ㈜HTC)
- ▶재 위 탁(2차): '11. 6. 1.~'14. 5. 31. (수탁업체: ㈜HTC)
- ▶ 재 위 탁(3차): '14. 6. 1.~'17. 5.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 재 위 탁(4차): '17. 6. 1.~'19.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 재 위 탁(5차): '20. 1. 1.~'22.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 시의회 동의안: 4회차 재위탁 원안가결[의안번호 09-01472('16.12.16)]

〈 수안보 및 서천 연수원 민간위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탁회수	수탁업체	협약금액 수탁기간		입찰 방법	비고
	(1차) 최초위탁	(A)HTC	1,980	'07.6.1~'10.5.31(3년)	공개경쟁	
	(2차) 재 위 탁	(A)HTC	1,980	'10.6.1~'13.5.31(3년)	공개경쟁	
	(3차) 재 위 탁	(A)HTC	2,020	'13.6.1~'16.5.31(3년)	공개경쟁	
서 천	(4차) 재 위 탁	(F)HTC	2,018	'16.7.1~'18.12.31 (2년6월)	수의계약 (2회유찰)	시의회동의 09-1005 ('16.3.9)
	(5차) 재 위 탁	㈜산하HM	2,139	'19.1.1~'21.12.31(3년)	공개경쟁	
	(6차) 재 위 탁	㈜산하HM	2,733	'22.1.1~'24.12.31(3년)	공개경쟁	
	(1차) 최초위탁	(A)HTC	1,890	'08.6.1~'11.5.31(3년)	공개경쟁	
	(2차) 재 위 탁	(A)HTC	1,970	'11.6.1~'14.5.31(3년)	공개경쟁	
수안보	(3차) 재 위 탁	㈜오브이룸스	2,013	'14.6.1~'17.5.31(3년)	공개경쟁	
	(4차) 재 위 탁	㈜오브이룸스	2,020	'17.6.1~'19.12.31 (2년7월)	공개경쟁	시의회동의 09-1472 ('16.12.16)
	(5차) 재 위 탁	㈜오브이룸스	2,236	'20.1.1~'22.12.31(3년)	공개경쟁	

〈 민간위탁 법인 현황 〉

가.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주)오브이룸스	2. 대 표 자	서 정 완	
3. 사 업 분 야		·광호텔, 리조트, 연수원 네공 : 사업성 검토, 공사,		
4. 주 소	수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82 오랜후레쉬빌딩 802호(쌍림동)			
5. 전 화 번 호	02-2261-5900			
6. 회사설립년도	2002년 01월 24일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2002년 01월 24일 ~ 2022년 9월 현재			

8. 주요연혁(요약)

연 도	주 요 내 용
2002년	한솔오크밸리 콘도 객실 위탁운영
2009년	라이프스타일호텔(영등포) 위탁운영
2010년	그린그래스호텔 마케팅 활성화 연구용역 수행
2014년~현재	서울시수안보연수원 위탁운영
2017년	서울시장 우수기관 표창 수상(서울시제2879호)
2018년	라마다 평택호텔 운영자문

나. 조직 현황 : 49명

다. 위탁운영 실적내역

연 번	발주기관	위탁기간	위탁내역	시설개요	위탁비용
1	한솔개발 (주)	2002. 1 ~ 2014. 6	▷ 시설명 : 오크밸리 ▷ 객실 : 931실 ▷ 휘트니스센터, 볼링장, 오락실, 당구장 등 ▷청소 공용부분 및 도로	1.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2. 시설규모 : ▷ 부지면적 : 11.25km² (스키장 1.68km²,골프장 4.45km² 등) ▷ 객실 : 931실	-인건비 및 비용: 실비 - 일 반 관 리 비 : 4천만원/월
2	엠오에이치 개발(주)	2009. 8 ~ 2011.12.	▷ 시설명 : R호텔 ▷ 객 실 : 196실 ▷ 비즈나스센터, 한식당 등	1.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2. 시설규모 : ▷ 객실 : 196실 ▷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기 본수수 료: 매출의 2% 성과 수수료 상호협의
3	서울특별시	2014. 6 ~ 2022.12	▷ 시설명: 수안보연수원 ▷ 객실 : 110실 ▷ 연수시설 편의시설 식당	1. 소재지: 충북 충주시 2. 시설규모 : ▷ 객실 : 110실 ▷ 연수시설, 편의시설, 식당	운영비 가격제안

- 민간위탁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 (2016년 12월 16일)되어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수안보연수원외에도 서천연수원과 속초수련원을 포함한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천연수원과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속초수련원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속초수련원,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운영현황 〉

구분	속 초	서 천	수안보
위 치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 1길 99
개원일자	'97. 3. 15('09 리모델링)	'07. 6. 26	'08. 7. 11
객 실 수	80실	151실(단체용 15실)	110실(단체용 10실)
운영형태	직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8층 (1동) 연면적 7,243㎡	지하2층, 지상4층 (4동) 연면적 18,925㎡	지하2층, 지상6층 (2동) 연면적 21,731 m²
부지면적	$25,936m^2$	$97,684m^2$	$59,815m^2$
교육시설	강당 (100석) 세미나실 1 (30석) 세미나실 2 (16석)	강당 (200석) 중강의실 1 (40석) 중강의실 2 (40석) 시청각실 (40석) 소강의실 1,2,3 (각 10석)	강당 (150석) 중강의실 1 (65석) 중강의실 2 (138석) 시청각실 (40석) 소강의실 1,2,3,4 (각 10석)
부대시설	사우나, 휴게실, 식당, 매점, 노래방, PC방, 테니스장 등	사우나, 식당, 수영장, 노래방, 매점, PC방, 당구장, 탁구장 등	사우나, 식당, 수영장, 노래방, 매점, PC방, 당구장, 탁구장 등

나. 수안보연수원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반대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민간위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종합적 · 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체제 미흡 · 공익성(공공성) 퇴색
· 공익성 ·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행정국은 연수원 운영업무는 민간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상호 결합하였을 때 만족도 제고 등 운영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용직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 등 민간위탁이 갖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1	인력 개발과	수안보 연수원	재계약	시설	㈜오브이룸스	3년	적정

-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바.
 - 수안보연수원 운영은 연수훈련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 시설로써 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며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다만, 서울시 3개 연수시설의 연도별 이용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으로 운영되는 속초수련원의 경우 직원들과의 친근성 등으로 인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수안보연수원과 비슷한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는바, 따라서 수안보 연수원은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운영의 특색을 갖춰 직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3개 연수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현황 〉

구 분	종 합 만족도	속초	서천	수안보	조사기관
′10년도	83.6	84.9	82.4	83.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2년도	84.1	85.0	84.4	8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6년도	82.8	84.4	80.6	8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8년도	81.3	81.0	81.1	81.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년도	84.2	83.9	82.1	86.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2년도	85.6	85.3	85.4	85.5	㈜케이스탯리서치

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3항은 민간위탁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민간 위탁의 효과성 평가, 위탁사무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제2항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③, ④, 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76.43점으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고,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3개 연수원(속초·서천·수안보)중에서 3회 연속 만족도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므로, 동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3개 연수원 종합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

구분	속초	서천	수안보	제주
2018년	81.0	81.1	81.7	미운영
2020년	83.9	82.1	86.6	미운영
2022년	85.3	85.4	85 . 5	86.9

○ 다만, 동 수탁법인은 2014년 6월부터 8년간 위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시 동종·유사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행정국과 수탁기관 간 의사소통 및 사업계획의 치밀한 지도·점검 등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다각적인 검증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

一 < 그 간의 위탁 경과 >

- ▶ 최초위탁(1차): '08. 6. 1.~'11. 5. 31. (수탁업체: ㈜HTC)
- ▶재 위 탁(2차): '11. 6. 1.~'14. 5. 31. (수탁업체: ㈜HTC)
- ▶ 재 위 탁(3차): '14. 6. 1.~'<u>17. 5.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u>
- ▶ 재 위 탁(4차): '17. 6. 1.~'19.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 재 위 탁(5차): '20. 1. 1.~'22.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연수원 지도·점검 결과 〉

일 시	주요 점검 결과
2022년 상반기	• 전년도 지도점검 집행 이행상태 (양호) • 통제구역 및 사무실 등 시설보안 (미흡) • 우기 대비 시설점검 (미흡)
2021년	• 2021년 물품관리프로그램 물품관리 및 입력실태 (양호) • 시설물 보수, 정비, 청소상태 등 (일부 미흡) • 휴관 및 운영기간 민간위탁 근로자 근태점검 (미흡) • 코로나19에 따라 운영기간 부족
2020년	• 2019년 지도점검 집행 이행실태 (양호) • 2020년 물품관리프로그램 물품관리 및 입력실태 (양호) • 시설물 보수, 정비, 청소상태 등 (미흡)

○ 또한, 행정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¹) 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²)(제16조)에 따라 동 수탁법인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¹⁾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55

제출년월일: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써

나. 민간위탁 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재계약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

○ 필 요 성 : 연수원은 신임자 교육, 부서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수안보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 건물면적 : 연면적 21,731m², 지하2층~지상6층, 4개동
 - 부지면적 : 59,815 m²(대지 : 34,764 m², 임야 : 25,051 m²)
 - 연수시설 : 객실(110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1. 1.~2025. 12. 31.(3년)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89백만원 / 년
 - 산출근거 : 충북형 생활임금, 물가 및 운영비용(유류단가, 전기, 가스 등) 상승률 반영 및 정원 증가 등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2. 7. 20.(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 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치과진료실 체력단련실
 -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수안보연수원 개원 : '08. 7. 11.
- 최초위탁(1차): '08. 6. 1.~'11. 5. 31. (수탁업체: ㈜HTC)
- 재 위 탁(2차) : '11. 6. 1.~'14. 5. 31. (수탁업체: ㈜HTC)
- 재 위 탁(3차): '14. 6. 1.~'17. 5.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재 위 탁(4차) : '17. 6. 1.~'19.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재 위 탁(5차) : '20. 1. 1.~'22. 12. 31. (수탁업체: ㈜오브이룸스)

※ 작성자 : 인력개발과 후생팀 고범주 (☎ 2133-5783)